

서울특별시 마포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5-104
----------	-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5. 8. 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다수인이 이용하는 교통 관련 시설인 ‘택시승차대’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흡연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구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해당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금연구역 지정 범위 추가(안 제6조제1항제3호)

나. 띄어쓰기 등 구문 정비(안 제6조제1항제3호)

3. 주요 토의과제

없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9조(금연을 위한 조치)

나.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
다. 합 의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타사항

- 1) 입법예고: 2025. 7. 10.~2025. 7. 30. (제출된 의견 없음)
- 2) 새마포담당관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: 원안 동의
- 3)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: 원안 동의
- 4) 가족정책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결과: 개선사항 없음

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마포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에 따른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로부터 10미터 이내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금연구역의 지정 등) ① 구 청장은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 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 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 다.	제6조(금연구역의 지정 등) ① -- ----- ----- -----.
1. · 2. (생 략)	1. · 2. (현행과 같음)
<u>3. 버스정류장 10미터 이내</u>	3. 「 <u>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 행규칙</u> 」에 따른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로부터 10미터 <u>이내</u>
4. ~ 9. (생 략)	4. ~ 9. (현행과 같음)
② ~ ④ (생 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서울특별시 마포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-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제2항제1호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, 한시적인 경비로서
총 3억원 미만인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- 조례 개정에 따라 금연구역 안내판 및 현수막 제작·설치 등 홍보를
위한 비용이 예상되나 그 비용이 1억원 미만으로 예상됨

4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보건소 건강동행과 유효선
연 락 처	02-3153-9053